

임상실습생의환자진료범위및책임관련주요지침및세칙

- 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임상실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학생의 진료 행위 범위)** 학생은 진료참여 임상실습 상황 하에서의 기본 의료행위의 수준별 구분 기준(학생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,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시행하는 수준,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관찰 또는 보조하는 수준)에 준수하여 학생 실습 담당 교수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제3조(사회적 책무성)** 학생은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자로 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맡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,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가 요구하는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학생의 임무)** 학생은 각 과가 요구하는 병실/외래 환자를 맡아서 일차 의료업무를 담당 하되 매일 환자를 방문하고 환자의 진척기록(progress notes), 임무완료기록(duty-off report) 및 퇴원기록(discharge note) 작성을 담당 하여야 하고 지도 감독하에 기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.
- 제5조(실습태도)** ① 학생은 간호사나 다른 의료 종사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, 그들의 업무를 존중하고, 겸손한 태도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.
② 학생은 실습과정에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고, 실습과정에서 발생한 조그만 실수라도 감추지 않고 즉시 담당 주치의, 교육 담당 전공의 및 학생 실습 담당 교수에게 보고한다.
- 제6조(안전)** 학생은 의료 행위 중 본인의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. 본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시 즉시 학생 실습 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제7조(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)** 학생은 모든 실습과정에서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, 실습 중에 얻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8조(용모 및 복장)** 학생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기타 사항)** 기타 임상 실습과 관련된 사항들은 학칙과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